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0가단○○○○○ 청구이의
원 고 신○○ (79○○○○○-1○○○○○○○)
부산 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 ○○아파트 ○○○호
피 고 박○○ (81○○○○○-2○○○○○○○)
경산시 ○○읍 ○○리 ○○
변 론 종 결 2010. 7. 23.
판 결 선 고 2010. 9. 3.

주 문

1.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. 8. 11. 선고 2008가소○○○○○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,200,02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이 법원이 2010카기○○○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. 5. 18.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,200,02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.
4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5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. 8. 11. 선고 2008가소○○○○○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의 쟁점

○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

○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에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시 발생하는 집행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

2.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○○○○○ 계약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. 8. 11. 「원고(신○○)는 피고(박○○)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. 9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」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고 한다)을 선고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0. 2. 18. 대구지방법원(2010년 금 제○○○○호)에 이 사건 판결의 원금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0,332,054원을 공탁(이하 '이 사건 공탁'이라고 한다)하였다.

다. 피고는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, 울산지방법원은 2010. 2. 26.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(울산지방법원 2010타경○○○ ○, 이하 '이 사건 경매'라고 한다)을 내렸다.

라. 이 사건 판결은 2010. 3. 5. 확정되었다.

마. 피고는 2010. 5. 11.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금하였다.

3.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범위 판단

가.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(소극)

◇ 민법 제487조 전문 :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.

◇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,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기 전에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◇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구체적인 잔여액수

-이 사건 공탁금 중 8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2008. 9. 5.부터 2010. 2. 18.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.

-2010. 2. 19.부터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한 2010. 5. 11.까지 82일간의 지연손해금은 359,452원(=800만 원 × 20% × 82일/365일, 원 미만 버림)인데, 이 금액이 남아있다.

나. 이 사건 경매 실행에 든 비용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범위에 포함되는지(적극)

◇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(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),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,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(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 41620 판결, 1989. 9. 26. 선고 89다2356,89다카12121 판결 참조).

◇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범위에 포함되는 이 사건 경매비용의 구체적 액수(을

제3호증의 1 내지 5, 을 제4호증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)

-인지대 : 5,000원 인정

-등본대 :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인 1,200원만 인정

-송달료 : 28,010원(=예납한 211,400원 - 남은 183,390원)만 인정

-예납금 : 사용한 453,500원만 인정

-증지대 : 3,000원 인정

-등록세 : 24,860원 인정

-법무사수수료 :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과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출한 325,000원(=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비 30만 원 + 제출대행비 25,000원)만 인정

-합계 : 840,570원

4. 결론

○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1,200,022원(=359,452원 + 840,570원)이 남았다.

○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,200,02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.

○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.

판사 이준영 _____